

1. 개정이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업무 위탁기관이 기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한국상하수도협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세부 업무에 대한 수행자를 변경하고자 함.

또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부지침상 규제사무(점검)를 시행규칙에 상향입법하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알권리 및 예측가능성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점검 규정 명문화(안 제12조의4)

법 제21조의5제1항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취소 여부 판단을 위한 점검 권한을 시행규칙에 명시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업무 위탁기관 변경(안 제14조, 제16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으로 변경

다. 행정처분기준 명확화(안 별표 2의2, 별표 2의4, 별표 7의4)

행정처분 위반차수 적용 규정 및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제3조제31호 및 제32호”를 “제3조제33호 및 제34호”로 한다.

제2조의3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를 “같은 법 제32조제8항제2호”로, “같은 법 제33조제7항”을 “같은 법 제33조제9항”으로 한다.

제12조의4를 제12조의5로 하고,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지도점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법 제21조의5제1항각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의 장”을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하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라 한다)”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한국상하수도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을 “한국상하수도협회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하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라 한다)”을 “한국상하수도협회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영 제44조에 따른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시험위원회의 위원 및”을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을 “한국상하수도협회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호 중 “제23조의2제1항·제4항”을 “제23조의6제1항·제4항”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2의4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7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4 제1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7의4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

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을 “시행규칙 제23조의6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을 “시행규칙 제23조의6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시행규칙 제23조의2제7항”을 “시행규칙 제23조의6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6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인 력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각각 갖추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가. 환경(수질부문)·토목·위생·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2. 청소종사자 3명 이상
시 설	－창고
장 비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운반차량: 1대 이상 －고압세정기(18ℓ/min, 150kg/cm² 이상): 1대 이상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환기기구(200m³/hr): 1대 이상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고무재질의 옷·안전모·안전벨트·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잔류염소측정기·색도계·탁도계): 각 1대 이상(제22조의5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한다) －누전차단기: 1대 이상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 및 제32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 ----- 제3조제33호 및 제34호----- ----- -----.
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 ----- ----- ----- -----.
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 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	1. ----- ----- ----- -----. ----- -----같은 법 제32조 제8항제2호----- ----- ----- ----- 같은 법 제33조제9항----- -----

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취급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의 대상인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 라. (생략)

2. (생략)

제12조의4 (생략)

<신설>

제1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의 장은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

-----.

가. ~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12조의5 (현행 제12조의4와 같음)

제12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지도점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법 제21조의5제1항각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
-----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하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라 한다)-----

면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
방법·합격기준·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
험일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한국
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에 공
고하여야 한다.

②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1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
격증 발급 등) ① (생략)

②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수시
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
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
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
티미터)을 첨부하여 법 제56조
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
(이하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한국상하수도
협회-----

-----.

②-----

----- 한국상하수도협회장-----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
격증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한국상하수
도협회장-----

-----.

③ ~ ⑤ (생략)

제16조(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①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영 제4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시험위원회의 위원 및 정수시설운영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시험 문제의 출제와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2제1항·제4항 및 별표 7의3에 따른 저수조청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①-----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

-----.

②-----
----- 한국상하수도협회장 -----

-----.

제32조(규제의 재검토) -----

-----.

1. 제23조의6제1항·제4항 ---

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의 기준과 저수조청소업의 변 경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2. (생 략)	----- ----- ----- 2. (현행과 같음)
--	---